KOSHA GUIDE

C - 77 - 2013

- (나) 가로보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한 아웃트리거 (Outrigger) 형식의 견고한 지지대 사용
- (다) 크레인 또는 와이어로프,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
- (라) 가로보의 넘어짐, 무너짐, 끼임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방법, 작업순서,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- (마) 가로보 취급 근로자 안전모, 안전대 착용
- (바) 크레인으로 가로보 운반작업 중 하부 출입금지조치
- (사)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의 주행방향, 중량물 하부에 장애물이나 근로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크레인을 이동
- (아) 크레인 운전 시에는 크레인 진행방향, 권상·권하하는 와이어로프의 주변 상황 및 운반 중인 중량물의 흔들림 등을 주시하여야 함
- (자) 주권과 보권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훅은 크레인의 최상부에 권상하여 운전 중 흔들림에 의한 충돌이나 주변 설비 와의 간섭을 방지하여야 함
- (8) 탑정부에 설치된 유압잭은 강연선을 가로보에 고정한 후 유압을 사용하여 부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유압잭과 Strand Wire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.
- (9) 상단 가로보 인양시 주탑의 기울어진 형상으로 인해 탄성변위가 발생하므로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유압잭을 상단 가로보와 벽체 사이에 설치하고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탑주 간의 설계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.

6.6. 탑정 새들 작업안전

- (1) 탑정 새들은 현수교 주탑의 최상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안 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,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